

# 개 선

제 목 수입결의 결재 체계 마련  
소 관 부 서 처  
내 용

관리원은 연료유, LPG, 윤활유 검사수수료, 의뢰시험 등과 관련한 수입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회계규정」 제41조에 따르면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고 「회계규정 시행세칙」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수입담당자가 관리원의 모든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입금을 수입결의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그러나 「위임전결규정」에서는 수입결의와 관련하여 전결권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며, 실제 전 부서에서는 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례적으로 부서장을 전결권자로 하여 결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이는 「위임전결규정」에서 예산품의 및 지출결의에 대해 금액대별로 전결권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,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입금의 처리에 있어 전결권자의 임의 지정으로 인해 금융 또는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.

## 조치할 사항

처는 「위임전결규정」에 수입결의와 관련하여 전결권자를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